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및 근무시간	채용기간	인원	직무내용
정책 지원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8급상당) (주40시간,1일 8시간)	1년	3명	·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 조사 • 연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한 사항 ·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지원 등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지원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응 시 자 격 요 건

○ 공통 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나이: 일반임기제지방행정서기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응시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자 격 요 건
정책 지원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사항> *관련분야: 공공행정, 법률자문, 법무행정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상세히 명시)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3. 보 수 수 준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상한액 55,877천원 / **하한액 39,859천원**

※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5.18.(수)~ 5.20.(금)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성동구의회 사무국(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 1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2022.5.20.(금) 18:00까지 의회사무국 도착분만 인정)**

※ 우편접수시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연락 요청(02-2286-6453) 후 응시 수수료 동봉(5,000원)

※ FAX, 이메일, 대리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2.5.26.(목)	2022.6.3.(금)	성동구 의회사무국 1층	2022.6.9.(목)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구비서류, 경력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합격자 발표:**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개별 면접을 통해 질의·판단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발표:**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성동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 출 서 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인증(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5,000원)
- **응시수수료를 미납한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우편접수의 경우, 유선 연락(02-2286-6453) 후 응시수수료 동봉(5,000원)

※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이며, 해당 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사본가능)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인정

○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7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8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9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연,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시험일정 변경 등에 따른 일정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면접시험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을 치를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성동구 의회사무국 의정팀《02-2286-6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